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4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이학영·박홍근·진선미

이정문 • 한정애 • 이용선

전재수 · 안호영 · 이병진

김용만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,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(제12조의4제3항).

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 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 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

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4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(수요층의 지역적·인적 범위, 취급품목,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)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의 직영점이나 가맹점
- 2. 제1호 외의 점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점포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2조의4(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) ①·② (생 략)

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(수요층의 지역적·인적 범위, 취급품목,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)의자기 또는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의4(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(수요층의 지역적·인적 범위, 취급품목,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)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의 직영점이나 가맹점
- 2. 제1호 외의 점포로서 가맹본 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 거나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있 는 상품이나 용역을 가맹본부

<u>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점</u> <u>포</u>